

## § 성북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드리며, 제안 내용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제 단체, 활동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도 선진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가치나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책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동안 성북구 조례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초기의 선진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련 법령이나 정책,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낡은 조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화석화된 조례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를 재정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여 조례 개정(안)에 담아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하나 잘 만든다고 현실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듯이, 이번 개정 작업이 향후 지역사회의 사회적가치 실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자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 이후의 실천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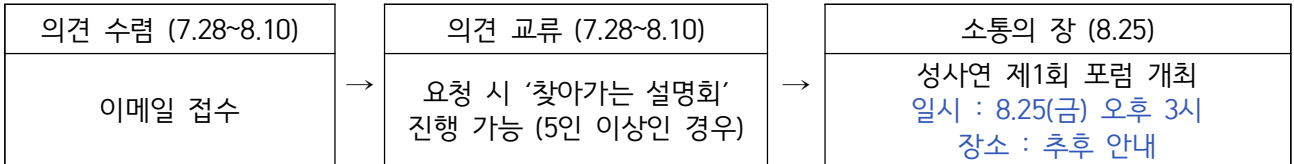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공동대표 일동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지역 단체 및 활동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함께 완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의견 제안 기간 : 2023.7.28.(금) ~ 2023.8.10.(목)
2. 제안 방법 : 의견 제안서 작성(붙임1) 및 제출
3. 조례 개정을 위한 향후 계획



4. 의견 제출 및 문의 :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이메일 [sbsva2021@gmail.com](mailto:sbsva2021@gmail.com)

※ sb 성북 법무행정서비스 링크 : <http://law.sb.go.kr/lims/front/index.html>

## 붙임.1

## 성북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자 (단체)	성명(단체명)			
	연락처(휴대폰)	단체의 경우 사무실,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 연락처	E-mail	단체의 경우 사무실,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 이메일
조례에 대한 이해 (선택)	1. 잘 알고 있다. ( )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3. 잘 모른다. ( ) 4. 전혀 모른다. ( )	개정에 대한 의견 (선택)	1. 필요하다. ( ) 2. 필요하지 않다. ( ) 3. 모르겠다. ( ) 4. 기타 ( )	
성사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선택)	1. 모두 동의한다. ( ) 2. 일부 동의한다. ( ) → 아래 칸에 의견 기재 3. 동의하지 않는다. ( ) → 아래 칸에 구체적 개정안 또는 의견 기재			
조례 개정안 및 의견	(가능한 상세히 적어주세요.)			

◆ 각 항목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추가 내용 작성 시 자유 형식으로 기술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 제안

### < 개정 제안 취지 및 배경 >

1. 2014.12월 제정된 성북구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대한 재조명
2.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 마련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가치에 대한 확인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정비

### < 개정 주요 내용 >

1. 성북구의 '사회적가치'의 뜻 재정비
2. 성북구 조례 상 '사회적경제'의 뜻 재정비
3.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조정 및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위원회' 통합
4. 수탁기관의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재정보증의 면제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정비(협동조합 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6.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상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를 재정비

### < 신·구조문 비교표 >

<b>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b> [시행2023.1.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85호, 2022.12.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지역경제과), 02-2241-3890				
기 존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1안) 서울특별시 조례 준용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2안) 영국 램베스 참고                              "사회적가치"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켜 공동체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실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b>경제적 부문(E)</b>                              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td> </tr> </table>	1안) 서울특별시 조례 준용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2안) 영국 램베스 참고 "사회적가치"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켜 공동체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실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b>경제적 부문(E)</b> 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1안) 서울특별시 조례 준용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2안) 영국 램베스 참고 "사회적가치"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켜 공동체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실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b>경제적 부문(E)</b> 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p>2.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p> <p>3.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p> <p>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p> <p>: 생략 :</p>	<p>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p> <p>나. 생활임금을 수급받는 고용인의 수 증가 다. 지역 주민의 지식 및 기술 향상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 라.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원봉사조직, 공동체조직, 중소기업과의 협력 기회 촉진</p> <p><b>사회적 부문(S)</b> 마.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바. 안전한 노동·생활 환경의 조성 및 유지 사. 남녀의 기회 평등 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의 기회 제공 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 성인들을 위한 안전 및 복지의 증진 차. 건강의 불평등 감소</p> <p><b>환경적 부문(E)</b> 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다. 폐기물 감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하. 에너지 및 연료 소비의 감소</p> <p>2~3. 생략 (현행과 같으나 기존의 ‘호’를 ‘항’으로 변경)</p> <p>4."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 생략 :</p>	
<p>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2)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참여</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li> <li>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li> <li>3.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li> <li>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li> <li>5.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li> </ol> <p>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삭제 -</li> <li>2.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li> <li>3.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li> <li>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li> <li>5.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6.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li> </ol> <p>④ 구청장은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거나 참여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li> <li>2.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li> </ol> <p>④ ~ ⑤ 생략 (번호 변경, 내용은 현행과 같음)</p>	<p>3) 주민 참여 기회 제공 (공모)</p> <p>4) 협동조합활성화 지원 위원회 통합 : 구의원 2인으로 조정</p>
<p>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p>	<p>: 생략 (현행과 같음) :</p> <p>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p>	<p>1) 공개 회의로 진행, 참관 허용</p>

<p>제2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p> <p>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p>	<p>결로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p> <p>: 생략 (현행과 같음) :</p> <p>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위수탁협약 연장 또는 재협약 시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재정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p>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6.]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022호, 2014.12.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지역경제과), 02-2241-3890

기 존	개정(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시 조례 관련 조항 참고, 판로지원과 민간위탁 활성화 추가</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p> <p>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p> <p>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p> <p>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p> <p>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p>	<p>: 생략 (현행과 같음) :</p> <p>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p> <p>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p>	<p>나. 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까지 포함</p> <p>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p>

<p>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p>	<p>비</p>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구의회 사무국                  3.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개정 2014.12.26)                  4. 성북문화재단(신설 2014.12.26)</p>	<p>:                  생략 (현행과 같음)                  :                  3. 성북구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4. &lt;삭제&gt;</p>	<p>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p>
<p>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                  생략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대상 정비   서울시 조례 참고</p>
<p>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                  생략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대상 정비   서울시 조례 참고</p>
<p>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p>	<p>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공공기관 추가, 관내기업(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제한) 삭제</p>

<p>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li> <li>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li> </ol> <p>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생략 (현행과 같음)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p>	<p>* 사회적협동조합 추가</p>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1.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85호, 2022.12.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지역경제과), 02-2241-3890

기 존	개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li> <li>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li> <li>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li> <li>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li> <li>5. "협동조합협의회"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현행과 같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조합의 정의 : 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정비</li> <li>3.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비</li> </ol>



<p>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p> <p>6.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p> <p>7.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7.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7. 사회적경제 정의 : 기본 조례안 반영</p>
<p>제5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p> <p>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p> <p>3. 협동조합연합회나 협동조합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p> <p>4. 구 관계 공무원</p> <p>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p> <p>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p> <p>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서울시 조례 참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의 통합 제안 (단, 협동조합 주체의 사경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합 시 구의원 2인으로 조정)</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p>	<p>&lt;삭제&gt;</p>	

<p>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lt;삭제&gt;</p>	
<p>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p>	<p>&lt;삭제&gt;</p>	
<p>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p>	<p>:                  생략 (현행과 같음)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p>	<p>* 조항 신설 검토                  서울시 조례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